

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36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,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(감면의 근거는 구체적인 대상·방법·범위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함)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 조항을 신설 (안 제35조제1항제12호)
-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명시한 별표 신설(안 제35조제2항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 비용추계서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있음(반영) - 붙임 5

- 입법예고 : 2020. 4. 2. ~ 2020. 4. 13. (1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6
- 방침결정문 : 붙임7

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

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은 별표 4에 따르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,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수도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수도행정과장 이 규 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요금팀장 박 남 규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진 영 주 (행정 3677)

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 (제35조제2항 관련)

구 분	감면 사항
1.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	○감면대상 및 감면액은 각각 「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, 「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 다만, 두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.
2. 지하의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	○수용가의 책임이 없고 수도사용량의 증가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며, 가정용은 지하부분 외에 누수의 발견이 어려운 건물내부 등에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○요금감면은 직전 4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상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로 한다.
3. 다자녀 가정, 임산부, 국가유공자,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, 수급자, 장애인	○가정용에 한하여 요금을 1단계(누진단계 미적용)로 적용한다. 단, 공동주택·다가구 등 개별 미 검침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사용량이 2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감면 가구 당 1,000원 정액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세대 당 감면대상자가 중복 될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.
4.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	○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상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.
5.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	○월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.
6. 수질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및 홍보하기 위하여 공익상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질 자동측정기의 사용량	○요금의 전액을 감면한다.
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정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	○가정용·일반용(대기업 제외) : 상수도요금의 100퍼센트 이내 ○대중탕용·전용공업용(대기업 제외) :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내 ○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

비고 : 제2호, 제3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2. (생 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,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</p> <p>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은 별표 4에 따르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[별표 4]</p>

[별표 4]

수도요금 및 수수로 감면 기준 (제35조제2항 관련)

구 분	감면 사항
1.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	○감면대상 및 감면액은 각각 「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, 「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 다만, 두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.
2. 지하의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	○수용가의 책임이 없고 수도사용량의 증가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며, 가정용은 지하부분 외에 누수의 발견이 어려운 건물내부 등에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○요금감면은 직전 4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상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로 한다.
3. 다자녀 가정, 입산부, 국가유공자,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, 수급자, 장애인	○가정용에 한하여 요금을 1단계(누진단계 미적용)로 적용한다. 단, 공동주택·다가구 등 개별 미 검침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사용량이 2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감면 가구 당 1,000원 정액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세대 당 감면대상자가 중복 될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.
4.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	○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상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.
5.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	○월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.
6. 수질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및 홍보하기 위하여 공익상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질 자동측정기의 사용량	○요금의 전액을 감면한다.
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	○가정용·일반용(대기업 제외) : 상수도요금의 100퍼센트 이내 ○대중탕용·건물공업용(대기업 제외) :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내 ○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

비고 : 제2호, 제3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별표 4] (생략)

[별표 5] (현행 별표 4와 같음)